

「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구매 지원 세칙」 제정

I. 추진배경 및 목적

- 공과대학에서 공학 수업용 소프트웨어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

II. 주요내용

- 지원범위 : 공학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
 - 한 개의 학부(과)에서 2개 이상의 수업에 이용하는 소프트웨어
 - 두 개 이상의 학부(과)에서 수업에 이용하는 소프트웨어
 - 공과대학 이외의 타 단과대학과 공동 이용하는 소프트웨어
- 신청기간
 - 최초 구매 : 년 2회 (매년 1월 말과 7월 말 까지)
 - 재구매 : 사용기한 만료되기 최소 2개월 전까지
- 구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 - 신청방법 : 공문(수신자 : 공과대학 정보화지원실)
 - 제출서류 : 수업정보(교과목명, 교과목번호, 담당교수, 수강인원 등), 활용 계획, 소프트웨어 상세정보(버전, 수량, 제작사 등) 등
- 구매 검토 및 비용분담
 - 소프트웨어 구매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학장단회의에서 구매 대상 검토·결정
 - 비용분담
 - 공과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의 50%를 분담하고 나머지 50%는 구매 요청 학부(과)에서 분담
 - 나머지 50%에 대한 분담 비율은 구매 요청한 2개 이상의 학부(과)(또는 타 대학 등)에서 책정
- 제재
 -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관은 소프트웨어 구매 지원 제한

※ 전문 :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구매 지원 세칙

□ 전문

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구매 지원 세칙

제정 2015. 3. 1.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소프트웨어”란 컴퓨터·통신·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·제어·입력·처리·저장·출력·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·명령(음성이나 영상 정보 등을 포함한다)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.
2. “불법복제”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범위) 공과대학 학부(과) 등에서 공학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.

1. 한 개의 학부(과)에서 2개 이상의 수업에 이용하는 소프트웨어
2. 두 개 이상의 학부(과)에서 수업에 이용하는 소프트웨어
3. 공과대학 이외의 타 단과대학과 공동 이용하는 소프트웨어

제4조(신청기간) ① 최초 구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말과 7월 말까지로 하며 년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② 재구매 신청기간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로 한다.

제5조(신청방법) 구매 신청은 공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수업정보(교과목명, 교과목번호, 담당교수, 수강인원 등)
2. 소프트웨어 활용 계획
3. 소프트웨어 상세정보(소프트웨어 버전, 수량, 제작사 등)
4. 그 밖에 소프트웨어 구매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구매 검토 및 비용분담) ① 소프트웨어 구매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구매 대상은 공과대학 학장단회의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.

②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의 비용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과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의 50%를 분담하고 나머지 50%는 구매를 신청한 학부(과)에서 분담한다.
2. 나머지 50%에 대한 분담 비율은 구매를 신청한 2개 이상의 학부(과) 또는 타 단과대학 등에서 정한다.

제7조(구매 소프트웨어의 활용여부 점검) 공과대학에서 구매 지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제재)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등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관은 소프트웨어 구매 지원을 제한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그에 따른다.

부칙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